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60 |
|----------|----|

제출년월일 :1999.11.2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이유

정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 및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우리구에 늘어난 정원을 조정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여 정원관리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총정원 619명을 62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604명을 607명으로 3명 증원함. (안 제2조)
- 나. 연차별로 감축하는 공무원 정원표 「별표1」, 「별표2」, 「별표3」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각각 3명씩 증원함.(안 부칙제2조)
- 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 2000년, 2001년에 감축되는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현행 “7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로 개정함(안 부칙 제4조)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103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부칙제2조
- 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중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19명”을 “622명”으로 하고, 집행 기관의 정원 “604명”을 “607명”으로 한다.

「부칙」 제2조(정원에 관한 적용례)중 「별표1」, 별표2, 별표3」의 부산광역시사하구 지방공무원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 구 분 | 정 원 |
|--------------|------|
| 정원의 총수 | 665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49명 |
|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6명 |

「별표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 구 분 | 정 원 |
|--------------|------|
| 정원의 총수 | 644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28명 |
|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6명 |

「별표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 구 분 | 정 원 |
|--------------|------|
| 정원의 총수 | 622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 607명 |
| 2. 의회사무국의 정원 | 15명 |

「부칙」 제4조(직급별 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중 “매년 7월31일”를 “매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